

# 定 款

制 定 1978.6.7  
變 更 許 可 1981.7.24

## 第一章 總 則

▲第1條 (名稱) 이 法人의 名稱을 社 團法人 韓國成人病豫防協會 (以下「協會」) 라 한다.

▲第2條 (目的) 協會는 各種 成人病의 豫防對策을 강구하고 診療技術을 개발보급하여 對國民指導 策을 實施하므로서 國民保健向上과 福祉社會 具現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事業) 協會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1. 成人病의 예방및 치료에 관한 技術開發및 보급
2. 成人病의 예방및 치료에 관한 지도계몽
3. 成人病에 관한 研究調査및 技術의 評價
4. 成人病에 관한 醫藥品의 研究개발
5. 成人病 診療를 위한 전문의 료기관의 설치운영
6. 成人病 예방및 치료에 관한 對國民 弘報
7. 其他 목적달성을 위한 附帶事業

▲第4條 (事務所) 協會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區에 둔다.

▲第5條 (支部) 協會는 서울특별시, 釜山 市및 各道에 각 1개의 지부를 둘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海外支部를 둘수 있다.

▲第6條 (支部設置와 運營) 支部의 설치와 運營에 관한 事項은 別도규程으로 定한다.

## 第二章 會員및 會費

▲第7條 (會員의 構成) ①協會는 아래 會員으로 構成한다.

1. 正會員
2. 特別會員
3. 準會員

②會員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은 協會의 目的과 事業에 關하고 이에 참여하는 成人病 關係學者 및 전문가 또는 本協會발전에 功이 있는 者로서 理事會의 동의를 받음者

2. 特別會員은 協會의 目的과 事業에 贊同하고 協力사업에 參加하여하는 企業 體 또는 團體의 代表者로서 理事會의 동의를 받음者

3. 準會員은 協會의 目的과 事業에 贊 同하고 協力사업에 參加하여하는 成人病 을 가진 者로서 理事會의 同意를 받음者

▲第8條 (會員의 權利, 義務) ①正會員은 總會의 구성원인 代議員이 될수 있다

②特別會員은 대표자 1人에 한하여 總會의 構成원인 代議員이 될수 있으며 協會의 事業에서 얻은 成人病 예방및 치료에 대한 調査研究나 技術개발 結果를 活用 또는 活用할수 있다.

③準會員은 協會事業에서 얻은 成人病 예방, 診療및 조사연구, 技術개발 結果또는 施設을 活用할수 있다.

④會員은 회비납부 義務를 갖는다.

▲第9條 (會費및 入會) ①會費는 다음 과 같이 구분하고 金額은 理事會 議決로 定하며 主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1. 入會費
2. 正會員會費
3. 特別會員 會費
4. 準會員會費

②協會에 입회하고자 하는 者는 協會소 정양식의 入會원서를 提出하되 入會金과 會費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納付한 金額은 반환치 않는다.

▲第10條 (會員의 資格상실) ①會員은 다음 各號의 경우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資格을 상실한다.

1. 協會의 名譽를 손상시킨때
2. 協會의 財産에 손해를 發生시킨때

## 第三章 任員과 代議員

▲第11條 (任員) ①協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약간명 (保健社會部 醫政局 長은 당연직 副會長이 된다)
3. 理事 7人이상 20人 (會長, 副會長 포함) 以內
4. 監事 2人

②任員은 總會에서 選출하고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第12條 (會長의 權限) 會長은 協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第13條 (副會長의 權限)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고 會長有故時는 年長順으로 會長의 權限을 代行한다.

▲第14條 (監事) 監事는 民法上 67條의 職務를 行한다.

▲第15條 (任員의 임기)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단 補選된 임기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6條 (任員의 처우) 任員은 명예직 으로 하고 보수는 支給하지 아니한다. 단 세입법위내에서 諸手當및 旅費등을 支給할수 있다.

▲第17條 (代議員의 構成) ①代議員은 당연직 代議員과 一般代議員및 支部代表代議員으로 구성한다.

▲第18條 (代議員의 任期) 代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단 補選된 代議員의 임기는 前임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9條 (代議員의 權限) 代議員은 總會에 參加하여 정관 제26조에 규정된 事項을 심의의결하며 임원의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第20條 (專門委員) ①協會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會長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支給하지 아니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수당, 기타 실비를 支給할수 있다.

▲第21條 (名譽會長, 顧問) 協會에 名譽 會長 1人과 고문약간인을 둘수 있다.

1. 명예회장은 협회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중에서 總會의 의결로 추대한다.

2. 고문은 協會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자 또는 成人病豫防및 치료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이사회의의 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제반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第四章 會議및 機構

▲第22條 (會議) 協會는 다음各號의 會議을 둔다.

1. 總會
2. 理事會
3. 專門委員會

▲第23條 (總會) ①總會는 代議員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年 1회 12月中에 會長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할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또는 監事의 요구가 있을때는 會長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정기총회및 임시총회는 회의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24條 (會議成立과 議決) ①協會의 회의는 본정관에 별도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議事は 참석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각급회의에 있어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를 할수 있다.

▲第25條 (議長) ①會長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議長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第26條 (總會議決事項) ①總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事項
2. 정관변경및 해산에 관한 事項
3. 예산및 결산의 승인사항
4. 재산독실및 변경에 관한 승인사항
5. 이사회가 제출한 안전의 인준사항
6. 명예회장추대에 관한 事項
7. 기타 필요한 事項

②總會의 議事は 의사록에 기재하고 議長 및 議長이 지명한 출석의원 5人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第27條 (理事會) ①이사회는 회장, 부 회장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年 2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監事의 요구가 있을때는 會長이 10일이내에 임시이 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協會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결로 실행이사 약간인을 둘수 있다.

④실행理事會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事項을 심의하며 協會의 목적사항을 수행 하는데 會長을 보좌한다.

⑤실행理事會에서 의결된 事項은 이사회에서 의결된것으로 본다. 단 이를 次期理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監事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第28條 (理事會議決事項) 이사회는 다음各號의 事項을 의결한다.

1. 總會에 부의할 事項
2. 總會에서 위임된 事項
3. 전문위원위촉동의와 회원입회동의에 관한 事項
4. 사업계획변경및 경쟁예산에 관한 事項
5. 사업계획수립및 예산편성과 結산에 관한 事項
6. 채무부담및 일시차입금에 관한 事項
7. 결원이사보선에 관한 事項
8. 規程제정및 改廢에 관한 事項
9. 대의원선출에 관한 事項
10.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규정
11. 지부설치및 해산에 관한 事項
12. 회비에 관한 事項
13. 고문추대에 관한 事項
14. 사무총장인준에 관한 事項
15. 기타 필요한 事項

▲第29條 (專門委員會) ①專門委員會는 各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學術, 技術, 調査研究, 開發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第五章 事務處및 職員

▲第30條 (事務處) ①總會및 理事會에서 결의된 事項과 협회 通常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事務 總長과 職員을 둔다.

②事務處의 各部署의 업무분장과 職制 人事管理, 服務, 보수에 關한 事項은 別 途規程으로 定한다.

▲第31條 (職員) ①事務總長은 회장이 任 命하되 理事會의 인준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職員은 사무총장 提請에 依하여 회장이 任命한다.

▲第32條 (事務總長의 任務) 사무총장은 회장의 命을 받아 다음 各號의 任務를 履行한다.

1. 總會및 이사회에서 議決된 事項의 處理
2. 직원들의 指揮監督
3. 기타協會 通常業務의 處理

## 第六章 財政및 會計

▲第33條 (財産) ①協會의 재산은 基本 財産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基本財産은 협회가 取得하고 있는 不動 産및 主要動産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다음各號의 收入金으로 하 며 定款第3條의 사업수행및 運營에 필요 한 用途에만 使用하여야 한다.

1. 會費
2. 補助金
3. 贊助金
4. 事業收入金
5. 其他收入金

④協會의 재산중 現金은 金融機關에 寄存하여야 한다.

▲第34條 (基本財産의 處理) 기본재산을 讓渡, 担保, 貸付, 代替, 其他 재산상의 負擔을 주는 行爲를 하고자 할때에는 理事會 議決을 거쳐 主務部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35條 (會計年度) 協會의 회계년도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第36條 (預算, 決算) ①협회의 사업계획 及 預算은 매회계년도 開始前에 이사회 및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事業실적및 決算은 매회계년도 세세후 2個月以內에 이사회및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 야 한다.

▲第37條 (會計事務) 이 定款에 규정되지 않는 會計事務에 關하여는 豫算會計法에 準한다.

## 第七章 補 則

▲第38條 (施行規定) 이 定款에 규정 없는 事項으로서 協會運營에 필요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별도로 定한다.

▲第39條 (定款改正) 이 定款의 변경은 總會 在籍代議員 3분의 2 이상 贊成으로 議決하고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40條 (解散) 협회를 解散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總會 在籍代議員 4分之3以上 贊成으로 議決하고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41條 (財産處理) 協會解散時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협회와 유사한 目的을 가진 法人體에 기부한다.

## 附 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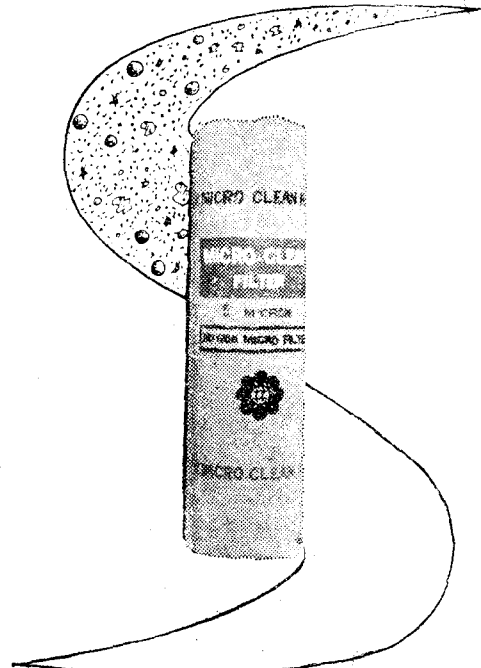
① (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部長官의 許可 日로부터 施行한다.

② 이 定款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③ 이 定款 許可當時 任員은 이定款에 依하여 選出된것으로 본다.

## 營業種目

- MICRO FILTER 및 空調 FILTER
- 淨水 裝置
- 純水 裝置
- 濾過 裝置
- CHEMICAL FEEDER (消毒裝置)
- POOL場 濾過裝置
- 其他 機器製作



- 본 사 : 서울특별시중구인현동73-1  
(풍전상가 3층가열 360)  
전화 265-9380, 266-0855
- 공 장 : 경기도시흥군의왕면내손리324-13  
전화 1343-3-3552
- 부산 지사 : 부산시중구부평동 2가53  
전화 23-2407
- 대구 지사 : 경북대구시중구서문로 1가25  
전화 22-4819
- 호남 지사 : 전주시진북동873  
전화 3-6859
- 대전 지사 : 대전시가양동427  
전화 7-4216, 3-0573

